

최정음 · 서창록 · 박영우. 2023. “인권 관점의 ‘의복권’ 고찰” 『인권연구』 6(1): 189-227.
Choi, Jeongeum · Soh, Changrok · Park, Young Woo. 2023. “A Study on the ‘Right to Clothing’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6(1): 189-227.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3.6.1.189>

[일반논문]

인권 관점의 ‘의복권’ 고찰*

최 정 음** · 서 창 록*** · 박 영 우****

한글초록

의복은 신체 보호 도구로서 1차 역할, 사회참여 도구로서 2차 역할, 문화적 수단으로서 3차 역할을 한다. 유엔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문서에서 의복에의 권리(right to clothing)를 직접 명시한 문서는 1) 세계인권선언,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아동권리협약, 4) 장애인권리협약이다. 하지만 의복권을 인권으로 접근하여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유는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 의복의 3차 역할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의복의 1, 2차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은 지금까지 큰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 그 가운데 빈부격차 증대는 취약계층의 의복 수급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기존 인권 담론에서 의복권의 위상을 짚어보고 ‘인권으로서의 의복권’ 개념을 정리한다. 더 나아가 설문조사로 국내 저소득가정의 의복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의류 복지제도의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혜자 수용성(acceptability), 질(quality)을 진단한다. 그래서 취약계층 의복수급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의복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 이 논문은 2022년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단체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교신저자. 휴먼아시아 사무국장

*** 공동저자. 고려대학교 교수

**** 공동저자. 휴먼아시아 연구원

— 목 차 —

- I. 서론
- II. 인권과 의복권
- III. 국내 의복 수급 실태
- IV. 문제 해결 모델
- V. 결론

I. 서론

의복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Gilman, Hill and Deegan, 2001: 26). 첫째 인간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이다. 둘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착용자의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배척(social exclusion)을 방지하는 사회적 역할이다(Graham, 2021). 셋째 의복을 착용하는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로 이는 사회·문화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의복은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 ‘의식주’의 하나로 인간의 기본생활에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의복의 필수성은 그것의 사회·문화적 성격에 가려 복지 대상으로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다. 그 결과 오늘날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식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은 기본적으로 의복에의 권리(right to clothing, 이하 ‘의복권’)를 인권으로 인정한다. 의복권은 세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 차원의 의복권 지원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81년 9월 사회권규약, 1990년 9월 아동권리협약,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을 각각 비준하였다. 우리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을 국내에 수용하고 이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의복권의 국내이행을 위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예컨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목적으로 우리 정부가 2016년 공표한 '아동 권리현장' 제5조는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로 나타나, 의복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복 지원 복지 관련 정부의 소극적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실제로 의복 지원을 인권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부 주도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엔의 인권 문서에는 등장하지만 가장 외면 받아온 인권이라 보아도 틀리지 않다(James, 2010; Graham, 2022).

빈곤은 의식주, 보건 의료, 교육 등과 관련된 생활필수품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Global Citizenship Commission, 2016: 54). 빈곤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의복 수급 관련 연구나 복지제도를 내놓을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국내 취약계층 관련 복지제도는 저소득가구 경제지원이나 돌봄에 편중되어 있고, 기존 지원금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은 요원하다.

오늘날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고민거리다. 취업, 경제적 부담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비혼 등 가치관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요인이 문제의 주원인으로 꼽힌다(지충남·김민지, 2019; 최영미·박윤환, 2019). 정부도 이에 적극 대응하려 하지만 양육비, 보육 보조비 지급·증액 외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지 다각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증가하는 가운데 정책의 세심함은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다. 의복 수급 관련 제도나 연구는 더욱 미미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기존 인권 담론에서 의복권의 위상을 짚어보고 '인권으로서의 의복권'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설문조사로 국내 저소득가정의 의복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의류 복지제도의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혜자 수

용성(acceptability), 질(quality)을 진단하며 취약계층 의복수급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망해 본다.

II. 인권과 의복권

1. 유엔국제인권규범과 의복권

유엔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문서에서 의복권을 직접 명시한 문서는 1) 세계인권선언, 2) 사회권규약, 3) 아동권리협약, 4) 장애인권리협약이다. 각 문서에 의복권이 포함된 조항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¹⁾

세계인권선언 작성 과정에서 의복권은 필리핀 대표 Carlos Romulo²⁾의 제안으로 식량권, 주거권, 의료권과 함께³⁾ 최초 논의 대상에 포함

1)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himself and of his family, including food, clothing, housing and medical care and necessary social services, and the right to security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sickness, disability, widowhood, old age or other lack of livelihood in circumstances beyond his control.”

2) 세계인권선언 초안은 1946-1948년 사이 초안작성위원회(Drafting Committee)와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논의에 따라 진행되었다. 해당 작업에 참여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호주, 벨기에, 소련, 칠레, 중국, 이집트, 프랑스, 인도, 이란, 레바논, 파나마, 필리핀, 영국, 미국, 우르과이, 유고슬라비아

되었다(Morsink, 1999: 192). 이때 의복권은 주로 ‘식량권(right to food)’ 및 ‘주거권 (right to housing)’과 한데 묶어 논의되었는데, 이들을 직접적으로 문서에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선언에는 ‘사회복지’, ‘적합한 생활수준’, ‘안녕’만 포함하고 이들의 해석에 의식주가 나타나도록 하는 간접명시 방식을 택할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초안 작성 과정에 참여한 서구권 대표들은 대부분 문서의 간결성과 국가의 실질적 이행 의무 부담을 이유로 간접명시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중국 대표 장평춘의 강력한 주장으로 의복권은 선언문에 모두 포함되게 된다(Morsink, 1999: 195-198). 이때 장평춘이 이야기한 ‘의식(衣食) 보장 의무’의 배경은 유교사상에서 백성을 대하는 인군(仁君)의 도(道)였다(Morsink, 1999: 197).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 사회권규약 제11조 제1항

사회권규약 제11조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의식주권’의 삼입을 두고 가장 첨예한 논의를 이끌어낸 것은 주거권이였다(Craven, 1998: 305). 준비위원회는 ‘주거권’과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각각 나누어 조항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인권선언과 마찬가지로 하

3) 식량권, 주거권, 의료권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주의 전통을 배경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초안은 캐나다 법학자 존 험프리(John Humphrey, 1905-1995)가 작성하였는데 작업에 앞서 초안 내용에 대해 각국으로부터 제안(proposal)을 받았다. 이때 파나마와 칠레가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선언 초안이 작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식량권, 주거권, 의료권이 포함되었다(Morsink, 1999: Glendon, 2003).

나의 조항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결과적으로 의식주권은 모두 동일한 조항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유는 1) 주거권만 따로 명시할 경우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에 포함되는 식량권과 의복권의 처리 방법 부재, 2) 당시 이미 채택 완료된 세계인권선언에는 의식주권이 같은 조항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3)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해 식량권, 의복권, 주거권은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이었다(Craven, 1998: 305-307). 사회권규약은 2023년 3월 기준 171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의복권 관련 유보(reservation)를 선언한 협약국은 없다.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아동권리협약 제27조 제3항

아동권리협약은 1924년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채택한 제네바 아동권리선언(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⁴⁾ 및 1959년 유엔 아동권리선언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협약의 큰 틀은 1978년-1980년 사이 유엔인권위원회와 초안작성 실무그룹의 작업으로 완성되었다.

협약 작성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폴란드의 공헌이다. 폴란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참상 속에 어린이들의 고통을 목도(OHCHR, 2007:

4) 해당 선언문의 초안은 세이브더칠드런 재단 창립자 Eglantyne Jebb (1876-1928)이 작성하였다. 총 5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 내용이 길지 않으며 물질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한 도구와 수단이 제공되어야 할 것 등과 같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식주권’ 관련 해당 선언문이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식량권(제2조 The child that is hungry must be fed)과 주거권(제2조 the orphan and the waif must be sheltered and succored)이다.

xxxvii), 아동인권 담론형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최종 채택된 협약의 초안을 폴란드가 주도하여 작성하였고 이때 이전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의복권이 포함되었다.

위에서 볼 수 있듯 아동권리협약은 의식주에 대한 ‘지원계획 제공’을 협약 당사국의 의무로 정하였다. ‘적합한 생활수준’을 위한 요소로 의식주, 의료, 사회복지, 생활조건을 개선할 권리를 같은 선상에 둔 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보다 의식주 보장 의무를 특히 강조한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효력발생 조건은 20개국 비준 후 30일 경과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가 채택,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1990년 9월 2일 효력이 발생하였다. 오늘날까지 유엔총회가 채택한 총 9개의 인권협약 가운데 채택부터 효력 발생까지 최단기간 걸린 협약으로⁵⁾, 2023년 4월 초 기준 미국을 제외한 모든 유엔가입국이 비준하였으며, 사회권규약과 마찬가지로 의복권 관련 유보를 표한 협약국은 없다.

당사국은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장애인권리협약 제28조 제1항

5) 유엔총회의 채택부터 효력발생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된 국제인권협약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으로 12년 이상 소요되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은 채택부터 효력발생까지 9년 이상 소요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에 채택된 협약으로 의복권을 명시하고 있는 유엔 인권문서 가운데 가장 최근에 도입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필요성은 2001년 멕시코의 제안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지지로 유엔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멕시코는 경제적 취약계층 가운데 장애인의 비중이 높음에도 관련 내용이 유엔이 2000년 상정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인권과 개발 관점에서 장애인 인권보호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Herro, 2019: 249).

협약에 ‘의식주’가 명시된 이유는 사회권 협약 11조 1항의 ‘적당한 생활수준’을 장애인권리협약 적용에 장애인은 사회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기능(function fully and effectively in society)하기 위해 특정 의복을 필요로 하기⁶⁾ 때문이다(Hathaway, 2005: 503). 더불어, 장애인권리협약 작성 단계에서 유엔총회는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권리를 만들기보다 기존 인권규약이 정한 권리를 장애인권리협약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택했는데(Kayess and French, 2008: 20), 그 결과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 선례에 따라 의식주권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계인권선언의 의복권 직접 명시는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 유엔 주도 인권보호메커니즘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비중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다. ‘의식주’를 인간의 기본생활에 필수 요소로 보는 것은 동서고금 비슷하다. 하지만 의식주 보장을 위해 기울여온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의 양상은 사뭇 다르다.

예컨대 주거권(right to housing)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사회권규약 채택에 뒤이어 1970년대부터 발전해 왔다. 1988년 유엔총회는 2000년까지 모든 사람이 적절한 환경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목적을 천명

⁶⁾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CESCR), 1994. General Comment No. 5.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Doc. HRI/GEN/1/Rev.7, para. 33. p. 32.

하는 ‘2000년까지 피난처를 위한 세계전략⁷⁾’을 채택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1996년에는 유엔인간정주센터(United Nations Center for Human Settlements, 이하 ‘UNCHS’)를 설립, 인간다운 주거환경 확보에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왔다. 사회권위원회는 1991년 일반논평⁸⁾에서 점유의 법적 안정성, 부담가능성, 거주가능성, 접근가능성 등과 같은 ‘적절한 주거’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이은기, 2016: 271) 협약국은 경제발전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였다. 동 위원회는 1997 일반논평에서 강제철거 문제를 다루며 강제철거는 사회권규약이 정한 주거권뿐만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제1항 ‘어느 누구도 ...주거...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받지’ 않을 권리와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며⁹⁾ 주거권을 폭넓게 해석하였다.

국제사회는 식량권(right to food) 이행에서 주거권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1945년 유엔은 식량 접근성, 농업 생산성, 영양 증진 목적의 국제 식량농업기구(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¹⁰⁾’)를 설립하였다. 1961년 유엔은 FAO와 전세계 기아종식 목적의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7)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이하 UNGA), 1991, A/RES/46/163/EN.

8) CESCR, General Comment No. 4.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Sixth Session, 1991), UN Doc. E/1992/23, annex III.

9) CESCR, Comment No. 7.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orced Evictions (Sixteenth Session, 1997).

10) FAO는 1974년 로마에서 열린 세계식량회의(World Food Conference) 포함, 다섯 차례(1996년, 2002년, 2009년, 2021년)의 세계식량정상회담(World Food Summit)을 개최해왔다. 2004년 FAO 이사회는 각국이 국내 식량권 증진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제도, 전략 등을 정리한 ‘식량권 가이드라인(Voluntary Guidelines to support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food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식량권 증진 활동을 하고 있다.

WFP)을 설립, 국제 차원의 식량원조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1977년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에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농업개발 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이하 'IFAD')을 개설, 국제 식량 조달 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식량권 증진은 유엔의 '기아 종식' 아젠다와 맞물려 다양한 경로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왔다. 유엔은 2000년 채택한 MDGs의 첫 번째 목표와 2005년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두 번째 목표에 기아 종식을 포함시켜 식량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해 왔다. 유엔은 2000년부터 식량권 현황 파악을 위한 유엔 식량권 특별 보고관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 가운데 의복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협약국의 의무 이행 및 모니터링 관점에서 의복권은 다른 권리와 비교해 현저히 적은 관심을 받아온 것이다(Graham, 2021: 32).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보고서에서도 의복권은 논의 대상이다. 기타 유엔이 작성한 의복권 관련 문헌 역시 문화·종교를 드러내는 의복 착용, 여성의 의복제한 등과 같이 종교권, 여성 인권 범주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의복수급의 중요성,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나 이행 권고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Craven, 1992). 과거 한국이 유엔 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도 의복권 관련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가운데 서구를 중심으로 인권기반 의복권 담론이 생겨나는 추세다¹¹⁾. 대략 2000년 이후 의복권에 대한 인식 및 이행 부족을 논하는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James, 2010; Saul et al, 2014; Graham, 2021; Bokhary, 2022). 의복권을 생계를 위한 권리에서 더 나아가 개

11) 빈곤 측면에서 의생활 질과 착용자의 사회참여 상관관계를 조망한 연구는 다수 있다(Francis, 1992; Redmond & Skattebol, 2019; 최윤정·장세운·이유리, 2020). 그러나 인권 차원에서 의복권을 다룬 연구는 2000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의 행복과 복지에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Antonescu, 2016)도 있다. 그레엄(Graham, 2021)은 오늘날까지 의복권의 내용(content)은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어 정확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고, 개념이 없으니 인권으로서의 의복권 권리주장(rights claiming)이 생겨나지 않았으며, 이는 또다시 의복권 개념 정립에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의복권 현황을 진단한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의 중요성을 전세계가 직접 겪은바, 코로나19 영향이 의복권 담론 형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¹²⁾.

더 나아가 그레엄은 ‘Sharewear UK¹³⁾’, ‘Peace and Justice Project¹⁴⁾’와 함께 2022년 9월부터 영국 맨체스터와 버밍엄을 중심으로 의복권 캠페인(Right to Clothing Campaign)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의복 수급문제는 빈곤의 결과이지만, 이미 대두된 식량권, 연료권과 달리 사회적 논의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현실 인식, 그리고 빈곤층이 의복수급 문제로 취업, 교육 기회 참여 제한 등과 같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캠페인 목적은 의복권 인식 향상, 취약계층에 의류 분배, 그리고 의복권을 둘러싼 법제도 구축이다(Pickard-Whitehead, 2022).

2. 인권으로서의 의복권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뭔가 걸쳐야 한다. 둘째, 사회

12) 코로나19를 겪으며 적절한 보호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를 의복으로 간주할 경우 정부의 보호장비 미지급은 인권침해로 여길 수 있다.

13) 영국 노팅엄 지역에서 2014년 설립된 의류자선기관(clothing charity)이다.

14) 사회·경제적 정의, 평화, 인권 증진 목적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2021년 영국의 전 노동당 대표 Jeremy Corbyn이 설립하였다.

참여(social participation)를 위해서다. 대부분 사회생활을 할 때 의복 착용은 의무이다. 셋째,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때 의복은 착용자의 정체성, 자존감 등과 연관된다. 정리하면, 의복은 신체 보호 도구로서 1차 역할, 사회참여 도구로서 2차 역할, 문화적 수단으로서 3차 역할을 한다.

인권에서 의복의 1차 역할과 관련되는 권리는 건강권과 생명권(세계인권선언 3조)이다. 의복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니 건강권, 더 나아가 생명권과 연결된다(James, 2010). 극한의 추위와 같은 기후조건에서 생명유지를 위한 의복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Bokhary, 2022: 3). 특수 보호장비 없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근무 환경에 놓여 있는 작업자가 위험 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복이 보호장비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James, 2010).

의복의 2차 역할과 관련있는 권리는 좀 더 다양하다. ‘특정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의복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해석의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복의 2차 역할은 근로권(세계인권선언 제23조), 사유재산소유권(세계인권선언 제17조), 교육권(세계인권선언 제26조) 등의 여러 인권과 관계가 있다. 예컨대 개인의 의복 수급은 많은 경우 의복 구입으로 가능한데 의복 구입시 재화의 교환이 일어나니 사유재산소유권과 관련이 있다. 사유재산소유는 많은 경우 근로행위에 따른 재화의 획득으로 가능하니 근로권과 연관이 있다. 근로행위를 위해서는 또다시 의복이 필요하다. 옷을 입지 않고 일터에 가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복은 근로권과 다시 교차한다. 교육권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의복을 갖추어야 학교에 갈 수 있고 교육 활동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의복권이 교육권의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적절한 의복 수급의 정당성 역시 이 같은 해석의 확장으로 성립된다(Graham, 2021: 34).

의복의 3차 역할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5조)’ 또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2조)’와 연관지을 수 있다. 이 경우 의복은 단순히 몸을

가리고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도구’의 역할을 넘어 착용자의 선호도, 스타일, 전문성 등과 같은 다양한 개성 표현을 위한 ‘보조수단(accessory)’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의복의 3차 역할은 의생활 질과 연결된다. 의생활 질과 자아존중감, 사회 적응도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연구는 다양하다(여은아, 2001; Redmond and Skattebol, 2019; 최윤정·장세윤·이유리, 2020). 이들 연구에 따르면 의생활 질 향상은 아동청소년들의 교내뿐 아닌 대외 활동 참여도 상승에도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성인 대상 연구 결과 역시 비슷하다(최윤정·장세윤·이유리, 2020).

이렇듯 의복의 다양한 역할은 인권의 불가분성(不可分性, indivisibility)을 잘 보여준다. 다른 인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적절한 의생활은 사용자의 사회 참여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양질의 의복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의복권 증진 제도 수립과 운영이 필요함을 뜻한다. 하지만 의복권을 인권으로 접근하여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 의복권은 식량권, 주거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시급성이 떨어진다. 기아는 생존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사람이 장기간 물과 음식 없이 생명을 유지하기란 어렵다. 주거권은 식량권보다는 덜하지만 의복권보다는 시급하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개인의 경우 안전에 즉시 문제가 생기기 쉽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 입장에서 자력으로 주거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의 주거정책 수립에 정당성이 생기는 지점이다. 의복권은 시급성으로 따지기에 애매하다. 생명, 안전과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절한 의복 없이 극한의 환경에 놓일 때가 별로 없고 누군가에게 자주 빼앗기는 성질의 필수품은 아니다. 한두 벌만 있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넉넉한 식량과 위험을 피해 주거할 곳이 있는 한 당장 생존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둘째,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사용자의 개성과 연관된 의복

의 3차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곤란을 자주 경험하는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의생활 질 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낮은 의생활 질은 당사자의 사회참여 저하는 물론 사회적 배제까지 경험하게 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의복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이는 제도의 공백을 가져왔다. 이 같은 인권으로서의 의복권에 대한 관심 부족은 국가의 경제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적 고층에 따른 의복 수급 곤란은 서구권의 취약계층도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며(Gordon et al., 2013; Pickard-Whitehead, 2022) 국내 취약계층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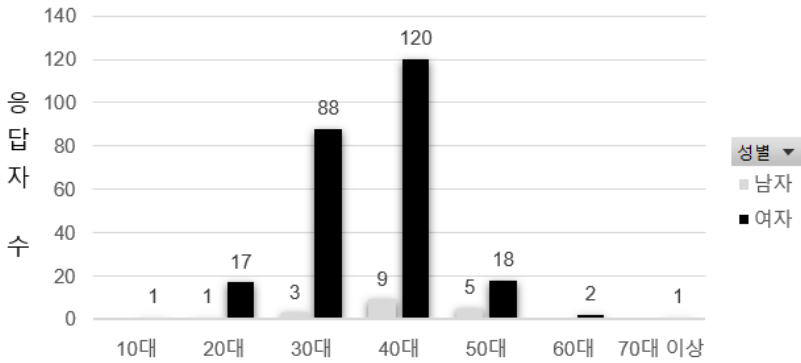
III. 국내 의복 수급 실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국내 의복권 보장 현황을 조사하였다. 첫째 취약계층 265가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이다¹⁵⁾. 이때 설문참여자는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2021년 하반기 진행한 ‘천사가 천사에게’ 중고물품 비대면 나눔 캠페인에 참여한 465가구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둘째 의복 수급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의 의복수급 사업내용 조사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함께 아름다운가게, 사단법인 옷캔, 사회적협동조합 안코의 대표 또는 사업담당자와 심층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국내 저소득가정 의복수급 현황

(1) 설문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15) 해당 설문조사는 2022년 4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그림 1> 설문 참여자 기본 정보

설문 응답자는 <그림 1>과 같이 남자가 18명(7%), 여자가 247명(93%), 연령은 20-40대에 편중되어 있다. 설문 대상이 영유아 재사용 의류 나눔 캠페인 참여자임을 고려할 때 이는 취약계층 아동 주 양육자의 특성으로 해석 가능하다. 정부의 복지지원 수급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166명(63%), 한부모가정 119명(45%), 차상위가구 44명(17%), 미혼모·미혼부 가구 3명(1%)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복지사각지대 1명,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가 6명(2%)이었다.

(2) 의복수급 실태

<표 1>과 <표 2>는 응답자의 월평균 의류비 지출 현황과 의류비 지출에 대한 부담 정도를 보여준다. 월평균 의류비 지출액의 경우 5만원 이하가 104명(39%)로 나타났고 6-10만원 사이가 70명(26%), 11만원 이상이 91명(34%)로 나타났다. 의류비에 대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건은 187명(71%), 조금 부담된다고 응답한 건은 71명(27%)으로 두 응답자를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97%가 의류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동시에 월 11만원 이상을 의류비로 지출하는 응답자 수가 91명(34%)임을 고려하면 취약계층

의 의류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취약계층 가운데 약 40%¹⁶⁾는 의복문제로 실질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표 1> 월평균 의류비 지출액(응답자 수)

가족 구성원수	5만원 이하	6-10만원	11-20만원	21-30만원	31-40만원	41-50만원	50만원 초과	합 계
1인	9	2	1					12
2인	37	28	23	5	1	1	3	98
3인	24	14	14	5	1	2	1	61
4인	19	14	10	5	1			49
5인	12	10	7	4	2	1	1	37
6인	2	1	2					5
7인	1						1	2
9인		1						1
합 계	104	70	57	19	5	4	6	265

<표 2> 의류비 지출에 대한 부담 정도(응답자 수)

월별 평균 의류비	매우 부담된다	조금 부담된다	적당하다	부담되지 않는다	합 계
5만원 이하	74	26	3	1	104
6-10만원	44	25	1		70
11-20만원	39	17	1		57
21-30만원	18	1			19
31-40만원	3	1	1		5
41-50만원	3	1			4
50만원 초과	6				6
합 계	187	71	6	1	265

아래는 설문 참가자들이 의류구매에 대한 곤란함을 직접 표현한 응답의 일부이다.

16) 의류비가 ‘매우 부담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의류비로 월 10만원 이하를 지출한다고 답한 응답자 118명.

“자녀 성장에 따른 의류와 간식비 지출이 부담됨, 중고 옷가게를 가도 거의 성인 옷이라 맞는 게 없고 한창 크는 아이들이라 식비가 많이 듭니다(40대, 여).”

“최소한만 먹여도 공과금 식비 지출과 의료비 교통비로 생활비 소진이 되어 계절에 맞는 의류를 구매하기 너무 힘들다. 아이가 금방 자라는데도 철마다 바뀌는 비용을 감당 못하고 있어요. 엄마인 저는 옷을 거의 구매 못 하고요(30대, 여).”

“지난겨울까진 후원받은 옷을 입힐 수 있어서 버텼지만, 계절이 바뀌고 아이 성장으로 입힐 옷이 없어서 너무 곤란했습니다(40대, 여).”

“성장기 아이들이 둘이 있다 보니 제때 옷 사기가 부담되어서 둘째 딸의 경우 작년 겨울 발목이 흰히 드러나는 작아진 바지를 입고 다니게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50대, 여).”

“날로 폭풍 성장하는 아이들과 몸이 좋지 않은 막내 아이 치료로 정해진 수급비에서 생활하기에 버거워 옷을 살 엄두를 못냈(40대, 여).”

“자녀 성장에 따라 사이즈업, 계절별 날씨 따라 옷 두께나 길이를 조절해서 입혀야 하니 학교와 기관에 다니면서 더욱더 신경 쓰입니다. 겨울철 옷은 비싸기도 하고요(40대, 여).”

“저렴한 옷을 산다 해도 아이가 성장하며 사이즈가 작아져 계절마다 옷을 사야 해 부담이 크다. 고정적 지출 다 빼고 얼마 안 되는 생활비에 5만 원 쓰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무리해서 아이 옷은 사도 내 옷은 포기하는 상황(20대, 여).”

“팬티와 양말에 구멍이 나서 창피하다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친구 아이 입던 옷을 가지고 왔는데. 둘째 아이에

게는 작운데. 옷이 너무 이쁘다면서 작은 옷을 본인이 입겠다고 해서 미안했어요(30대, 여).”

위에서 볼 수 있듯 의류비 지출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지속적 의류구매 필요성’이다. 구매하거나 지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의복수급 문제를 해결해도 아이의 성장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담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별이 다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사계절이 뚜렷하고 연교차가 심한 한국의 기후 특성으로 계절별 의복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평균 착의량이 높은 겨울철 의복비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의류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가중하는 두 번째 요인은 ‘의료비 지출’이다. 이때 의료비는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의 건강문제에 따른 의료비도 포함한다. 의료비 지출은 대략 1) 가구 중 구성원이 장애를 가진 경우, 2) 지병이나 정신질환 등과 같이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3) 수술과 같은 갑작스런 건강문제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 납부 능력 저하 세대, 도심지의 저소득취약계층, 근로빈곤계층 등에서 상당한 복지사각지대를 갖고 있다(서남규·이용갑, 2011: 196). 장애, 정신질환 등과 같이 의료비 지출이 장기적으로 요구되거나 갑자기 수술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의 복지제도에서 의복권은 보장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 이런 경우 의복 구입은 실제로 취약계층의 지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의생활 질 저하는 취업 면접시 자신감 저하, 양육

17) ‘천사가 천사에게’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며 응답자들과 나눈 유선 상담 결과, 겨울철 외투 구입이 어려워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 나눔 물품에는 포함되지 않은 전기장판, 이불과 같은 물품을 요청하는 사례도 자주 있었다. 겨울철 난방비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기장판, 이불 구입에는 목돈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해서였다.

아동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취약성을 불러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이가 장애가 있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의류비 지출도 고민을 하게됨(50대, 여).”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 치료비 등 생활비를 우선순위로 지출하다 보면 의류비는 전혀 지출할 수 없어서 달라지는 계절에, 커가는 아이들의 의류가 부담됩니다(40대, 여).”

“이혼하기 전에 돌 지나서 아버님이 아기 패딩을 사주셨는데 엄청 큰 패딩이었어요. 크니까 처음엔 접어서 입히고 한해 한해 커갈수록 사이즈가 딱 맞더라구요. 3년 동안 입히니 털도 많이 빠지고 새 걸로 사주고 싶어서 큰맘 먹고 사려고 했는데 그때 아기가 장염으로 입원해서 저랑 아기 실비보험조차도 없었는데 이혼하자마자 바로 위기가 찾아왔어요(20대, 여).”

“미혼모로 둘째 낳기 전에는 한 부모로 혜택도 별로 받지 못하면서 수술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해마다 못해도 두 번은 옷을 사줘야 하는데 한번 살 때 많이 사기도 해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 힘들었어요(40대, 여).”

“제가 14년째 전신복합부위통증증후군·중증정신질환으로 의류비 지출은 못 하고 있습니다(60대, 여).”

“혼자 벌어 4식구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머니께선 암 수술 이후로 아직 항암치료 중이셔서 병원비가 들고, 아파트 대출금과 원금을 갚고, 식비와 공과금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을 지불하고 나면 옷이나 그 외의 것들은 그저 사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아예 구매하지 않아요. 아기는 커가고 옷이 작아져도 들어만 가면 짧아도 그냥 입히고 있어요(40대, 여).”

세 번째 의류비 지출 부담 요인은 ‘가계 지출 부담 증가’에 따른 의복 구매력 감소다. 이때 지출 부담 원인으로서는 공과금, 주거비(월세 등), 식비, 교육비, 보험료, 물가 상승이 언급되었다. 교육비와 식비의 경우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어 현재의 복지제도에 서 적절한 의생활은 요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종 공과금과 식비가 밀리는 것보다 옷을 빨리 빨아 입는 게 더 나아 적은 옷이지만 최대한 회전 빨리해서 입는다. 아이가 크다 보니 옷이 몇 개 없어 창피해하기도 한다. 같은 옷만 입어서(30대, 여).”

“대출 빚이 지출이 제일 커서 겨우 공과금도 아끼려고 노력 하지만, 뜻대로 안 되고 먹거리도 의류를 살 수가 없네요(40대, 여).”

“생활비로 지출하기도 빠듯하고 밀린 공과금도 해결해야 해서 아이셋 커가면서 친구들 옷보며 사달라고 하지만, 이쁜 옷 입혀주고 싶어도 사줄 여유가 많지 않아서 힘이 드네요(30대, 여).”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몇 년 전에 산 지도 모르는 낡은 옷을 입어야만 할 때 식비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서 식비도 어렵습니다(30대, 여).”

“아무래도 의식주 중에서 제일 나중에 결정하다 보니 식비와 주거비 및 의료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적다(30대, 여).”

의류 부족으로 아이의 외출복이 없어 외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 자녀의 옷이 없어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기 곤란한 사례, 자녀 성장에 따른 신발이 없어 겨울임에도 여름 신발이나 슬리퍼, 작아진 신발 또

는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하는 사례도 있었다. 성인 응답자 본인의 의복 수급 상황도 열악하여, 겨울철 겉옷이 없어 외출이 어려울 정도라는 답변도 자주 눈에 띄었다. 정부의 복지 지원금은 적정 의복을 갖추기만큼 충분하지 않으며, 의류 구입은 식비나 의료비와 같이 더욱 시급한 지출에 우선순위가 밀려 곤란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응답자의 경우 “KF94 마스크가 너무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 자리를 구하러 면접을 보러가야 하는데 KF94 마스크를 써야 창피하지 않게 면접이라도 볼 수 있는데 살 형편이 안됩니다(50대, 여)”고 답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때였다. 마스크를 의복으로 놓고 보면, 의복수급 곤란으로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은 경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응답자 대부분이 마스크 구매에 대한 지출 부담이 상당하다고 답했으며 같은 문제로 외출이 꺼려진다는 응답, 자녀들이 학교에서 의무로 사용하는 마스크 구매가 부담이 된다는 답도 다수였다. 마스크가 아닌 일반 의복수급 문제에 따른 곤란 경험은 1인 기초생활수급가구¹⁸⁾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 의복수급 해결 실태

의복수급 방안으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180명(68%)이 온라인으로 중고·나눔 거래를 하거나 지인으로부터 물려받지만 마땅한 사이즈나 디자인의 의복을 찾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다고 답했다. 복지단체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의류를 지원받은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93명(73%), 국내 의류 관련 복지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241명(91%)에 이르렀다.

18) ‘천사가 천사에게’ 캠페인을 진행하며 응답자들과 진행한 유선 상담 결과, 1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시원,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약 50%였는데 이때 건강 문제로 경제 활동이 곤란하거나, 의료비·식비 부담으로 의복비 지출은 아예 불가능한 경우, 공황장애 등과 같은 심리 문제로 사회와 단절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 등과 같이 응답에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름다운가게 등과 같은 재사용판매매장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총 103명(39%)이었는데 이 가운데 47명(46%)이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유로는 1) 아동복이 별로 없어서, 2) 맞는 사이즈를 구하기 어려워서, 3) 물품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4) 중고물품이지만 여전히 가격이 높아서로 나타났다.

재사용판매매장이 있을 경우 이용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240명(91%)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의류 재사용판매매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47명(93%)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의류 재사용판매매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성장기 자녀 의복수급이 가능해지고 의복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의류 재사용판매매장이 설립될 경우 응답자가 바라는 내용은 거주지나 근무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을 것, 가격이 저렴할 것, 그리고 품질 좋은 물품이 다양할 것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2. 의복 수급 지원기관 현황

국내 정부 주도 의복 지원제도는 크게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의류를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분배하는 경우는 지진, 홍수, 화재 등으로 이재민이 발생하여 긴급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가 대부분으로, 취약계층의 의복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이나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사회에서 추진하는 의복 분배 관련 사업은 그나마 빈도있게 이뤄지는 편이다. 이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비영리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후원받아 취약계층에 분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물품은 기업의 재고정리 목적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기부금 발급 가능 기관에 기부 시 기부물품의 장부가액만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기부가 세제 혜택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며 (강영기, 2014: 130) 기업 담당자의 관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다.

비영리단체의 기업 후원 물품 분배 활동 예로는 사단법인 여성인권동감의 생리대, 기저귀, 방한복, 아기용품, 여성 의류, 화장품 등과 같은 물품 분배사업, 밀알복지재단의 2023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200명 대상 책가방 지원 사업¹⁹⁾ 등이 있다. 국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류를 직접 지원한 사례로는 패션그룹형지의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주민 대상 겨울의류 지원 (텍스타일타임즈, 2022: 44), LS일렉트릭의 2022년 안양시 저소득 독거노인 250여명 대상 방한복 및 방한화 지원(김영권, 2022) 등이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분배사업은 분배 물품과 수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수혜자 처지에서는 필요할 때 원하는 물품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때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재사용판매매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현물을 기부받아 판매하고 이에서 창출된 수익금을 재단의 복지사업에 투입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다²⁰⁾.

하지만 취약계층의 처지에서 아름다운가게 이용으로 의복수급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유는 아름다운가게의 운영취지가 일

19) 물품은 KB자산운용이 지원하였다.

20)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정리해보면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직’이라 할 수 있다(Perrini and Vurro, 2006; 백한나·홍지은·이제민·최진훈·심범수·김태동·이인성·김진우, 2015: 98). 사회적 기업의 출현은 미국에서 1970년대, 서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내의 경우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며 ‘저소득층 고용창출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목표로 국가지원금 등을 활용한 정부 주도 육성이 시작되었다(이승현·박성연, 2015).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여겨지는 아름다운가게는 2002년 재사용나눔가게 사업 형태로 설립되어 이후 다양한 독립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반인들의 재사용 운동 참여 독려이기 때문이다²¹⁾. 과거에는 교복 물려주기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이때 사업 목표는 취약계층 의류 지원보다는 환경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다. 더불어 아름다운가게 운영수익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 매장 개설 때 상권분석을 기본적으로 거치고, 주변의 기증 가능한 가구와 세대 수도 고려한다. 취약계층 인구가 많은 지역에 아름다운가게가 들어서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매장 유지비용을 고려하여 7-8년 전부터(2022년 5월 기준) 매장 개수를 늘리지는 않고 있다²²⁾.

아름다운가게가 기증받은 모든 물품은 되살림터에 모아 선별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기증품의 판매·폐기가 결정되는데 서울지역 기증품의 경우 70% 이상이 폐기된다. 폐기량은 아름다운가게 기증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시작하며 급속히 늘었다. 판매 물품 품질관리를 위해 물품 선별작업이 까다롭게 이뤄지다 보니 얼룩이 있거나 쉬운 유아동복은 아예 기부를 받지 않는다. 아동복 수급에 특히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아름다운가게 이용이 해법이 되기 어려운 배경이다.

2009년 설립된 외교부 산하 비영리 법인 ‘사단법인 옷캔(이하 ‘옷캔’)’은 국내에서 중고의류를 기부받아 필요한 곳에 분배한다. 하지만 대상은 개인보다는 기관이다. 설립 초기 옷캔은 국내 취약계층 대상 중고의류 분배를 시도하였으나 개인의 취향이 고려되어야 하는 의복 특성상 수혜자 만족도 유지에 부담을 느껴 사업을 단순화하였다²³⁾. 그 결과 오늘날 기부받은 의류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약 20%는 국내에서 분배하고, 나머지는 외국에서 분배 또는 판매하며, 판매 대금은 현지 관세, 물류비, 기타 복지사업에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21) 아름다운가게 나눔문화국 김하나 국장과 인터뷰, 2022년 5월 3일.

22) 매출액은 매장의 위치에 따라 다른데 국내 1위 매장의 경우 하루 평균 매출액은 300만원 선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유지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이 난다.

23) 옷캔 조운찬 대표, 최정음 인터뷰, 서울, 2022년 5월 19일.

대부분 타 복지기관을 거쳐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소 등에 분배한다.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에서 옷캔이 의류를 지원한 단체는 약 100여 개에 이른다.

중고의류 분배 복지사업을 하는 또 다른 기관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안코(이하 ‘안코’)'가 있다. 2022년 설립된 ‘좋은 사람이 함께 모여 좋은 일을 하는’이라는 뜻의 안코는 중고 아동복을 기부받아 취약계층에 필요 물품을 택배 또는 대면으로 전달한다²⁴⁾. 물품 신청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표가 우선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물품을 선정, 포장하여 택배로 전달하는 형식이다. 이때 한부모가정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확인 절차를 거치며 택배비는 수혜자측이 부담한다.

해당 사업모델의 특징은, 한 가정에 일회성으로 물품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수혜가정이 지속적인 상담 등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봄, 가을 등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필요한 수량과 크기의 물품을 보내주는 맞춤형 의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다. 이때 상담은 의류가 필요한 아동의 성장 속도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취약계층에 보살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물품은 수혜자 측으로 택배 발송을 기본으로 하나, 기관 방문이 가능할 경우 수혜가정에서 아동과 함께 방문하여 아동이 직접 원하는 옷을 고르도록 돕는다. 이는 수혜가정 아동의 행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안코 사무국 내부에는 중고의류를 일반 의류매장과 같이 진열하여 옷을 편히 둘러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공간이 있다. 안코는 아동의류만 취급하는데, 이유는 성인 중고의류의 경우 체취가 남아 있어 수혜자로서 불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 안코 정나겸 대표, 최정음 인터뷰, 2022년 5월 9일.

IV. 문제 해결 모델

앞서 살펴보았듯 국내 취약계층의 의복수급에 대한 필요는 절실한 가운데, 정부주도 의복수급 지원사업은 거의 없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의류 분배사업의 정도는 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장에서는 외국의 의류 복지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 가능 모델을 제시해 본다.

1. 사례 A: 요르단 의류은행(Clothing Bank)

요르단의 수도 암만 구시가지에 위치한 Clothing Bank(이하 ‘의류은행’)는 요르단 현지 취약계층에 의복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이다. 의류은행 운영은 요르단의 비영리기구인 Jordan Hashemite Charity Organization(이하 ‘JHCO’)이 맡고 있다. JHCO는 1990년 1월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공식적으로는 비영리·비정부기관이지만, 요르단 왕실 주도로 설립된 관계로 정치적·경제적으로 온전히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기관의 초기 설립목적은 요르단 국내외 인도지원사업 수행이었다. JHCO가 수행하는 여러 사업모델 가운데 의류은행은 인접국으로부터 난민 유입률이 높은 요르단 특성으로 난민 위주 구호 사업에 요르단 취약계층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상을 해소하고자 시행되었다.²⁵⁾

의류은행은 커다란 쇼핑몰과 유사한 외관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의복이 종류, 성별, 사이즈 등에 따라 갖춰져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물품을 직접 쇼핑하듯 고를 수 있다. JHCO에 등록된 취약계층 가정은 가족 수가 바코드 형식으로 입력되어있는 이용권을 받아 이를 지참하고 의류은행에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 정산 후 가져간다. 가족 구성원 한 명당 네 벌의 옷²⁶⁾을 선택할 수 있고 이용권은 1년

25) JHCO Hala Al-Zoubi, 최정음·박영우 인터뷰, 2022년 11월 20일.

에 두 번 지급되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하복, 동복 구비가 가능하다. 한쪽에는 웨딩드레스 코너도 있어 필요시 예비 신랑·신부가 직접 드레스, 구두, 악세서리 등을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의류은행에는 가방, 도서, 신발, 영유아 장난감 등도 마련되어 있다. 수혜자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구호물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품을 선택하여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충실히 채울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요르단의 의류은행은 수도인 암만과 중남부 카락(Karak) 두 곳에 있으며 북쪽 지역에 필요할 경우 이동식 의류은행²⁷⁾도 운영한다. 의류은행 물품은 요르단 기업이나 외국 원조 물품 가운데 일부로 충당된다. 예컨대 난민 구호 목적으로 요르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통관을 JHCO가 취급하여 면세가 가능하도록 돕고 이때 구호물품의 20%를 의류은행이 받는 방식이다. 이는 상당수의 난민유입을 경험한 요르단에 특화된 물품 수급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요르단의 호텔, 대형 쇼핑몰 등 약 100여 곳에서 의류 수거함을 운영하여 재사용물품을 선별하여 분배하기도 한다. 물품 선별은 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맡아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요르단의 대학에서도 봉사활동 실적이 졸업 필수 요건인 경우가 있어 자원봉사자 모집은 원활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2. 사례 B: 영미식 재사용판매매장(charity shop)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영미식 재사용판매매장 역시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다. 영미식 재사용판매매장은 중고 물품을 기증받아 되파는 전통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런 사업모델의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재사용판매매장 한두 지점의 증대를 넘어서 이를 이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생태계를 만

26) 네 별은 겉옷과 내의, 상하의를 고려하여 책정되었다.

27) 의류를 적재한 컨테이너 트럭이 이동하며 분배하는 방식이다.

들 필요가 있다. 재사용판매매장 수의 증대와 서비스 이용을 보편화하는 문화는 의류복지제도의 가용성 및 접근성 확보에 공헌할 것이다.

영미권, 특히 영국의 경우 재사용판매매장의 양과 질은 국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영국의 경우 2013년 기준 전역에 약 9,000개의, 아일랜드의 경우 2007년 기준 450여 개의 재사용판매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Charities Aid Foundation이 영국 국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지난 12개월 동안 재사용판매매장에서 1회 이상 물품을 구매할 경험이 있다(Edwards and Gibson, 2017: 71). 거의 유일한 재사용판매매장이 아름다운가게 또는 굿월스토어이고, 전국의 총매장 수는 각각 약 130여 개, 16개에 불과한 국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영미권 재사용판매매장의 기원은 1865년 런던에서 설립된 기독교 기반 구호단체인 구세군(Salvation Army)의 활동으로 여겨진다(Horne and Maddrell, 2002: 1). 구세군의 창립자 William Booth는 당시 노동자계급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을 목표로 이들에게 질 좋은 중고물품을 수거·선별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제 판매가 가능하게 했다.²⁸⁾ 이 같은 재사용판매매장 모델은 영국, 미국, 캐나다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특히 두 차례 세계대전 동안 영국에서, 경제공황 중 미국에서 크게 성장했다(Horne and Maddrell, 2002: 3). 오늘날 영국 소비자의 인식 평가에 따르면 재사용판매매장의 방문 및 소비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경제(cultural economy) 형태로 자리매김하여 재사용판매매장에서 구매한 물건 사용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덜하다. 그 결과 영국에서 재사용판매매장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매장 수가 더 많으며 수익도 더 높다.

이처럼 재사용판매매장 이용도가 높은 영국에서도 처음부터 대중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재사용판매매장이

28) <https://www.salvationarmy.org/ihq/Mission> 접속: 2023. 5. 1.

등장하던 당시 대중들에게 재사용판매매장 이미지는 ‘정돈되지 않은 어둡고 냄새나고 지저분’했다(Edwards and Gibson, 2017: 71). 이 같은 편견은 1990년대 재사용판매매장 관리자가 자원봉사자에서 채용 직원으로 바뀌게 되며 점차 오늘날의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판매 물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매장의 위치도 변화가 쪽으로 옮겨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마케팅을 사용하여 물품 디스플레이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전략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에도 공을 들여 여러 성공사례를 만들어 낸 결과다.

3. 국내 도입 가능 모델

위에서 살펴보았듯 의복권은 인권인 동시에 다른 인권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지만 의복권 이행을 위한 제도는 미비하다. 영미권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재활용판매매장이 있어 문제 해결이 수월할 것으로 보이지만 취약계층의 의복수급 문제가 이것으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름다운재단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약 130여개의 재활용판매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창출이라는 아름다운가게의 운영 취지를 살펴볼 때 아름다운가게 지점 수 증가가 국내 취약계층 의복수급 문제에 결정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 취약계층의 재사용판매매장 이용에 대한 욕구, 다시 말해 ‘수혜자 수용성(acceptability)’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제는 가용성과 접근성 및 질의 보장이다. 시민사회 활동을 넘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에 요르단의 의류은행과 영미식 재사용판매매장, 그리고 국내에 발달한 택배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식 하이브리드 의류은행을 설립하면 취약계층의 의복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하이브리드 의류은행이란, 1) 재사용판매매장과 동일하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2) 취약계층에 매년 일정 수량의 의복을 무료로 분배하며, 3) 더 나아가 수혜자가 원하는 경우 택배를

이용하여 비대면 분배까지 하는 ‘복합 재사용의류 분배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장점을 지닌다. 첫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아름다운가게의 성공사례와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환경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는 국내에서 새로운 재사용판매매장 모델 도입 때 성공확률을 높여줄 것이며, 이는 수익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취약계층의 의복수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의 공헌이다. 이는 양질의 물품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취약계층이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류를 공급받을 수 있고, 추가로 원하는 경우 저렴한 가격에 물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설계할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택배 시스템을 가동할 경우 수혜자 처지에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우려와 같은 심리적 부담 없이 양질의 의복을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매장 수 증대 부담을 택배 서비스가 완충하는 것이다.

최근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소비 취향에 맞추어 물품 선별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임민정, 2021: 58) 사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취약계층 의복지원’과 같은 사업 취지에 대한 적절한 홍보는 사업 승산 확률을 높여줄 것이다. 기본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적절한 의복 확보는 필수이나, 이것이 모두에게 쉬운 것이 아님을 대중에게 알릴 캠페인도 필요하다. 패스트패션의 인기로 물품 폐기 전 사용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양질의 중고물품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두한 · 김미숙, 2013: 325). 가구당 자녀 수의 감소는 중산층 이상의 경우 의복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이 역시 양질의 재사용의류 수급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아동복 물품 정리와 선별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양질의 아동복 구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의류은행 수혜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류은행 운영을 위한 가치 브랜딩(value branding)이 필요하다. 가치 브랜딩을 위한 방안으로 의류은행 구비 의복의 질을 높이는 것과 자원 선순환의 가치를 들어 의류 재사용은 자원 절약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담아 의류은행 기부자·구매자·이용자가 자원 선순환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물품 기증자에게는 의류은행 물품의 질과 양을 직접 결정하는 사업 주체이자 참여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증품이 국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전달된다는 점을 정확히 인도하고, 저품질의 기증품이 유통되었을 때 발생 가능한 역효과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같은 인도과정은 폐기물 처리 비용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류은행 운영의 사업 취지가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형성된 기증자와 의류은행 이용자 사이의 신뢰는 연대의식을 고취, 우리 사회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V. 결론

우리 헌법에 의식주권 보장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의식주권의 헌법적 해석은 대개 다음 세 조항을 바탕으로 한다: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이 의식주권 이행 정책을 직접 언급한 것은

제35조 제3항, ‘주택개발정책’에 관련된 부분 정도다. 하지만 의복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주거권과 식량권 관련 제도는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다.

정부차원의 주거권 제도 확립은 1971년 시작한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4년 ‘주거급여법’,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등의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김성연, 2020: 102). 주거권 관련 시민운동도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7년 설립된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1999년 시작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운동, 2013년 창립된 주거권기독연대, 2010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출범한 ‘민달팽이 유니온’의 활동이 바탕이 된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운동 등으로 지속되어 왔다(이은기, 2016: 272).

식량권의 경우 국내 실정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김종덕·신원식·이현정: 2010: 415). 보건의료기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영양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김종덕·감정기, 2007: 83). 그럼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학교 급식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사업 등이 마련되어 있고 시민사회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대상 푸드뱅크, 무료급식소, 복지재단의 도시락 분배사업 등이 있어 제도적으로 눈에 띄는 편이다.

하지만 의복권 관련해서는 양상이 다르다. 주거권을 헌법 차원의 권리나 헌법적 가치로 보는 연구는 다양하다(이은기, 2016; 김성연, 2020; 임성훈, 2021; 하민정, 2022). 식량권의 실정법 제정과 보편적 권리로서의 식량권 인식 증진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김종덕·신원식·이현정: 2010). 그러나 국내에서 의복권 관련 논의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가운데 의복수급에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이 존재하며 그 정도는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준이다. 앞으로 경제 양극화의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복권 증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경제발전의 이면에 놓인 국내 취약계층의 의복수급 문제는 기존의 인권담론이 발전해 온 ‘권리주장 → 법제도 구축 → 이행’과 같은 전

통적인 방식으로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인권으로서의 의복권 관념 및 제도 수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복권은 여러 다른 인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이다. 의복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부 주도 제도 확립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취약계층의 의복권 보장에 대한 필요가 확인되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실현과 이행이 가능한 과제로 여겨진다.

(논문접수일: 2023. 5. 23, 논문심사일: 2023. 6. 12, 게재확정일: 2023. 6. 22)

참고문헌

- 강영기. 2014. “기후변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에 관한 소고.” 『법과기업연구』 4(1): 123-152.
- 김두한·김미숙. 2013. “중고 의류제품에 대한 인식, 구매동기 및 구매행동 연구.” 『복식문화연구』 21(3): 324-337.
- 김성연. 2020.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급여 실태분석: 임차급여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3(4): 101-124.
- 김영권. 2022. “LS일렉트릭, 독거노인에 방한의류-방한복 전달.” *파이낸셜뉴스*.
- 김종덕·감정기. 2007. “식량권 실현과제와 사회복지.” 『비판사회정책』 24:63-100.
- 김종덕·신원식·이현정. 2010. “식량권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인식 유형.” 『사회보장연구』 26(4):-432.
- 백한나·홍지은·이제민·최진훈·심범수·김태동·이인성·김진우. 2015. “사회적 혁신의 확산에 관한 연구.”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8(2): 95-136.
- 서남규·이용갑. 2011. “저소득취약계층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경감제도 연구.” 『보건과사회과학』 29: 185-210.
- 오승진. 2007. “식량권(Right to Food)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1(2): 309-325.
- 이승현·박성연. 2015.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자아이미지 일치성, 기능적 일치성, 가치일치성이 고객만족과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아르다온가게를 대상으로.” 『유라시아연구』 12(3): 33-60.
- 이은기. 2016. “주거기본법의 제정과 주거권, 그 함의.” 『공법연구』 44(4): 267-299.
- 임민정. 2021. “중고의류 재판매 특성 -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1(2): 57-74.
- 지충남·김민지, 2019. “한국 사회의 저출산 원인파 해법: 참가정운동을 중심

- 으로.” 『평화와 종교』 8: 75-106.
- 최영미·박운환. 2019.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시민인문학』 36: 101-137.
- 최윤정·장세운·이유리. 2020.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존중감과 한국 사회 적응의 관계 - 한국에서 경험한 의생활 어려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복식문화연구』 28(6): 845-857.
- 텍스타일타임즈. 2022. “패션그룹형지, 산불 피해지역에 1억원 의류 지원.” 『Fashion Review』 370: 44.
- Antonescu, Madalina Virginia. 2016. “Clothing: from “Subsistence Rights” to the Category of “Comfort and Well-being Rights.”” *Logos Universality Mentality Education Novelty, Section: Social Sciences* 5(1): 7-17.
- Bokhary, Kemal. 2022. “Food, Clothing and Housings as Human Rights.” *Hong Kong Law Journal* 52: 1-8.
- Craven, Matthew C. R. 1998.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Perspective on its Development*. Oxford: Clarendon Press.
- Edwards, Delyth and Lisanne Gibson. 2017. “Counting the pennies: the cultural economy of charity shopping.” *Cultural Trends* 26(1): 70-79.
- Francis, Sally. K. 1992. “Effect of Perceived Clothing Deprivation on High School Students’ Social Particip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2): 29-33.
- Gilman, Charlotte Perkins, Michael R. Hill and Mary Jo Deegan. 2001. *The Dress of Women: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Symbolism and Sociology of Clothing*. Westport: Greedwood Press.
- Glendon, Mary Ann. 2003. “The Forgotten Crucible: The Latin American Influence on the Universal Human Rights Idea.”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16: 27-40.
- Global Citizenship Commission. 2016. “The Evolving Understanding of

- Rights.” In: Gordon Brown (Ed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the 21st Century: A Living Document in a Changing World*. Cambridge: Open Book Publishers.
- Gordon, David, Joanna Mack, Stewart Lansley, Gill Main, Shailen Nandy, Demi Patsios and Marco Pomati. 2013. The impoverishment of the UK: PSE UK first results: Living standards,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the UK.
- Graham, Luke D. 2021. “The right to clothing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in the context of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26(1): 30-49.
- Hathaway, James C. 2005. *The Rights of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ro, Annie. 2019. “The Pre-negotiation of UN Human Rights Treaties: The Cas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ternational Negotiation* 24: 240-265.
- Horne, Suzanne and Avril Maddrell. 2002. *Charity Shops: Retailing, Consumption and Society*. London: Routledge.
- James, Stephen Andrew. 2010. “A Forgotten Right? The Right to Adequate Clothing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Robert Garbutt (Eds). *Activating Human Rights and Peace: Universal Responsibility Conference 2008 Conference Proceedings*. East Lismore: Centr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
- Kayess, Rosemary and Phillip French. 2008. “Out of Darkness into Light? Introduc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Law Review* 8(1): 1-34.
- Morsink, Johannes. 1999.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rigins, Drafting and Int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7. *Legislative History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Perrini, Francesco and Clodia Vurro. 2006. “Social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social change across theory and practice.” In: Johanna Mair, Jeffrey Robinson and Kai Hockerts (Eds). *Social Entrepreneurship*. London: Palgrave Macmillan.

Pickard-Whitehead, Gabrielle. 24 September, 2022. New campaign aims to raise awareness of clothing deprivation, accessed on 16th March 2023 @

https://leftfootforward.org/2022/09/new-campaign-aims-to-raise-awareness-of-clothing-deprivation/?doing_wp_cron=1678931472.5349669456481933593750

Redmond, Gerry and Jennifer Skattebol. 2019. “Material Deprivation and Capability Deprivation in the Midst of Affluence: The Case of Young People in Australi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7 (February): 36–48.

Saul, Ben, David Kinley and Jacqueline Mowbray. 2014.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mmentary, Cases, and Materi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Right to Clothing’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Jeongeum Choi* · Changrok Soh** · Young Woo Park***

Clothing has three functions: primarily as physical protection, secondly as a tool for social participation, and thirdly as a cultural means. There are four international human rights document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at explicitly address the right to clothing: 1)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3)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4)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re are few welfare policies established to promote and realize the right to clothing. The ground of this gap is the general perception of clothing with its third function. Therefore, the significance and urgency of its primary and second functions have yet to receive enough attention. Meanwhile, increased economic disparity is worsening the clothing deprivation of vulnerable social groups. From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examines the status of the right to clothing within the human rights discourse and attempts to conceptualize the “right to clothing as a human right.” For this purpose, it assesses the current status of clothing depriv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firstly through a survey of 265 low-income households of the availability, accessibility,

* Secretary General, Human Asia

** Professor, Korea University

*** Researcher, Human Asia

acceptability, and quality of welfare policy on their right to clothing, and secondly through interviews with civil societies that implement clothing supply-related programmes. Lastly, it proposes a new model which can be implemented in the Korean context.

Keywords: Right to Clothing, Human Rights, UDHR, ICESCR, CRPD, CRC